

유럽聯合(EU)의 主要 政策關聯法規의 內容과 示唆點

愼 鏞 大*

차 례

I. 머리말

II. EU出帆의 意味

1. 統合推進 背景
2. EU통합의 基本原則 및 立法過程
3. 마스트리히트條約의 構成과 內容

III. 主要政策關聯法規의 內容과 向後 展開方向

1. 通商政策關聯法
2. 競爭政策關聯法
3. 環境政策關聯法

IV. 示唆點 및 結論

* 産業研究院 研究委員

I. 머리말

마스트리히트에서 서명된 “유럽 統合에 관한 條約(일명 “마스트리히트 條約”, Treaty on European Union)”의 발효로 유럽統合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 들고 있다. 1967년 통합조약에 따라 1951년 ECSC條約과 1957년 EEC條約 및 Euratom조약 등이 통합됨으로써 발족한 유럽共同體(EC)는 1986년 채택된 유럽單一議定書(Single European Act)에 근거하여 1993년 1월부터 域內單一市場을 出帆시켰고, 마스트리히트 條約의 발효로 1993년 11월 1일부터 유럽聯合(European Union)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마스트리히트條約은 經濟·社會分野에 국한되고 있는 EU統合의 정도를 政治·外交·司法分野로까지 擴大함으로써 域內統合의 水準을 한 단계 높여 간다는 것이다. 유럽 統合의 進展을 통해서 EU는 역내회원국간 經濟·社會의 결속(cohesion)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通商·競爭·環境 등 EU域內政策分野에서 共同政策의 마련 등 회원국간의 政策協助를 긴밀히 하는 契機를 法的·制度的으로 마련하였다.

즉, 유럽聯合은 마스트리히트條約을 통하여 通商政策 및 競爭政策分野 등 기존의 共同體 關聯法規를 정비하는 한편, 環境, 産業政策分野 등의 새로운 共同政策分野에 대한 法規를 정비하였다. 유럽聯合은 이와같은 法規의 정비를 통하여 政策手段들간의 조화를 달성해 감으로써 域外國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多者間協商에 의한 GATT/UR 協商의 성공적인 妥結以後, 강도있게 論議되고 있는 環境 라운드(Green Round: GR)와 論議가 豫想되는 競爭라운드(Competition Round: CR) 등은 多者間 論議가 본격화되기 以前段階에서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들에 의해서 雙務的인 방식에 의한 通商壓力手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의 關聯法規에 대한 理解를 통한 우리의 對應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마스트리히트條約의 法規가운데 최근 國際的인 論議의 對象이 되고 있는 유럽聯合의 通商·環境·競爭政策들의 關聯法規를 차례로 살펴본 다음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EU出帆의 意味

EU의 域內單一市場 形成을 위한 統合過程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유럽 지역에서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변화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마스트리히트 條約의 발효에 의하여 EU가 지금까지의 經濟共同體에서 유럽聯合體로 발전한 것은 유럽統合過程에서 가장 획기적인 진전으로 간주된다.

1. 統合推進 背景

EU회원국들(당시 EEC창설 6개국)은 1958년 로마條約(Treaty of Rome)을 締結하면서 향후 13년내에 域內市場(Internal Market)을 형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EU는 회원국간 域內비관세장벽의 상존, 노동, 자본 등 生産要素의 域內移動을 억제하는 제약요인이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왔으며,^{1),2)} 이에 따라 EU經濟는 動脈硬化症(Euro-Sclerosis) 현상이라 불리울 정도로 構造的 硬直性を 보여 왔다.³⁾

1) EU집행위는 1982년 현재 域內交易에 나타나는 保護主義의인 수단이 770여개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1985년 「白書」발간 이전 시점까지 EU域內市場에 現存하는 障壁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있음. ①회원국간 技術的 규제(technical regulation)의 차이: 域內교역에서 追加費用의 형태로 나타남. ②國境에서 通關關聯 行政節次 등의 統制: 域內교역에서 費用으로 轉嫁됨. ③公共購買時 여타회원국 企業에 대한 競爭制限: 公共購買物資의 單價引上을 초래함. ④金融, 運送分野 등 域內서비스 去來에 따른 제약요인.

2) Michael Emerson 외, *The Economics of 1992, The EC Commission's Assessment of the Economic Effects of 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3) 당시 EU經濟가 안고 있는 問題點으로는 다음의 內容들이 일반적으로 指摘되고 있음. ①技術進步率을 上廻하는 實質賃金(社會保障費 및 間接勞動費 포함)의 지속적인 上昇 ②擔稅率 및 社會保障費의 급격한 上昇과 企業의 新規雇傭 創出 減少 ③財貨·서비스 및 勞動市場의 극단적인 硬直性 노정 ④域內貿易에서 非關稅障壁의 증대로 회원국간 資本 및 勞動移動에 대한 制限 및 統制持續 등으로 로마條約에서 명시한 域內市場 完成에 失敗.

또한 EU는 1973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의 가입과 1981년 그리스의 가입 그리고 1986년 스페인, 포르투갈의 가입 등 3차에 걸친 會員國의 擴大로 기존 회원국들의 行政的, 財政的 負擔이 加重되었다.

더욱이 EU는 尖端技術産業分野에서 미국, 일본, 그리고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對外競爭力이 크게 약화되어 왔다. 또한 統合에 따른 經濟的, 社會的인 問題點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EU가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한 懷疑가 統合을 遲延시켜 왔던 다른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⁴⁾

위에서 설명한 요인으로 인해서 EU경제가 沈滯局面을 回復하지 못함에 따라 EU역내기업, EU집행위, 그리고 유럽의회 등은 高率의 失業事態를 해결하고 인플레이를 鎮靜시키는 한편 경제의 構造的 硬直性을 解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EU統合을 다시 논의하기에 이르렀다.⁵⁾

EU는 1985년 7월 역내시장통합백서를 채택하는 한편 같은해 12월 유럽單一議定書(SEA)를 채택하여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유럽 단일의정서는 기본적으로 로마조약 체결이후 완성키로한 域內市場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立法節次를 로마조약의 수정을 통해서 정리한 것이다.

즉, 유럽單一議定書는 경제·통화부문에서 회원국간의 협력촉구, 첨단

4) Michael Calingaert, *The 1992, Challenge from Europ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Community's Internal Market*, 1989. pp.6-7 참조.

5) 이 당시 EU執行委, 유럽議會 그리고 EU域內企業 등 域內統合의 주체들은 EU經濟의 沈滯가 로마條約締結以後의 課題인 域內共同市場의 완성부진에 따라 EU기업들이 「規模의 經濟」를 실현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企業의 生産效率 低下→ 生産費用의 增大→ 對外競爭力의 弱화를 招來하였다고 판단하고 域內障壁의 除去를 통한 名實相符한 EU共同市場의 완성을 주장하였음. 예컨대, 1981년과 1982년에 EU執行委가 발표한 EU역내시장 현황에 관한 Communication과 역내자유이동을 제한하는 장벽현황에 관한 Communication 그리고 1983년 유럽의회에서 채택한 EU經濟再建에 관한 Albert-Bull Report 등을 지적할 수 있음. 이밖에도 기업측에서는 당시 Philip社 회장이 “로마조약이후의 과제인 역내시장 완성의 실패가 유럽企業들이 EU域內外 市場에서 競爭力喪失의 主要因”이라고 주장하는 등 EU기업의 침체상을 대변하는 한편 EU역내시장 통합작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역설하였음. 특히 유럽의회가 채택한 Albert-Bull Report는 域內市場 완성의 지연에 따른 經濟的 損失이 EU GDP의 약 2%(共同購買에서 費用으로 推算되는 480억달러, 陸上運送時의 追加負擔 140억달러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등 EU域內市場의 完成 必要性을 力說하였음. M. Caligaert, 전게서, pp.7-8 참조.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촉진, 역내지역간 균형발전 노력 및 정치·외교부문에서 협력증대 등 역내시장완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책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로마條約의 테두리안에서 법적인 보완의 의미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1988년 상반기부터 EU 單一市場完成의 효과제고와 會員國間의 경제·통화정책의 조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경제·통화동맹의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經濟·通貨同盟의 조기추진론이 대두되어 1989년 4월 들로르 보고서(Delors Report)에 의해서 경제·통화동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안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經濟統合에 부응한 政治統合의 필요성은 政治同盟(PU; Political Union)案으로 구체화 되어 1990년 로마정상회담에서 경제·통화동맹 및 정치동맹을 위한 정부간 회의를 거쳐 1991년 마스트리히트에서 동 조약안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EU통합이 로마조약체결 이후 목표로 한 역내시장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의 입법추진에 머물지 않고, 로마법체계를 전면 개정하여 경제·통화동맹과 정치동맹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經濟的 統合과 政治的 統合간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경제통합성 과를 기초로 하여 정치통합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다.

둘째, EU역내단일시장의 完成效果의 提高 및 회원국간의 경제통화정책의 조화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대두된 점이다.

셋째, 統一을 실현한 獨逸을 共同體內에 보다 예속시키기 위한 여타 회원국들의 노력이 조기에 유럽연합의 실현쪽으로 선회한 점이다.

넷째, 걸프戰爭時 EU회원국간의 상호 정책조정의 미비 및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반성으로 EU공동의 對外政策의 統一 및 一貫性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섯째,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른 EU중심의 신유럽질서 구축의 분위기가 점증되면서 對外的 位相提高를 위한 認識이 擴散된 점이다.

이밖에도 EU의 입법과정에서 유럽의회의 영향력을 제고시켜, EC기구의 民主的 統制缺如(Democratic Deficit)의 補完 必要性 등이 현실적으로 대두된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條約案은 당초 절차상 1992년중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1993년 1월 EU역내단일시장의 출범과 동시에 발효토록 계획되었다. 그러

나 동 조약안에 대한 회원국별 비준과정에서 EU의 立法過程, 법률 및 예산 집행의 명료성 결여 등 민주적 절차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어 동 조약안의 회원국 비준과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⁶⁾

따라서 마스트리히트條約案은 마지막 批准國의 批准文書가 이탈리아 政府에 전달된 다음달의 첫날에 發效되도록 한다는 規定에 따라 1993년 10월 15일 독일의 批准書가 이탈리아 政府에 기탁됨으로 같은해 11월 1일 정식 발효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가 經濟·通貨同盟과 政治同盟을 실현해 가는 것은 EU가 單一市場의 형성, 單一貨幣의 사용 및 共同의 政治·外交 政策의 추진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經濟共同體에서 政治·經濟聯合體로 이행해 갈 수 있는 法的·制度的인 骨格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EU統合의 基本原則 및 立法過程

(1) 基本原則

EU 統合의 본격적인 推進은 「統合白書」(White Paper)의 발간, 유럽 單一議定書(Single European Act)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EU차원에서 法의 制定을 통하여 EU역내에 殘存하고 있는 人爲的인 障壁을 除去하고자 함에 있다. 이는 로마條約에 의한 EEC 出帆以後의 경험에서 볼 때 域內會員國들의 獨自的인 經濟政策의 實施에 따른 效果는 매우 制約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EU는 會員國 공동방식에 의한 시장기능의 활성화(회원국간의 국

6) 특히 1992년 6월 덴마크의 마스트리히트條約案의 부결과 프랑스의 힘겨운 비준, 그리고 1993년 영국의 批准過程에서 보여준 문제점들은 동 조약안의 비준과 발효의 어려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음. 각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 條約案의 비준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음. 1993년 5월 덴마크가 2차 투표에서 동 조약안을 비준하였고, 영국도 7월 23일 에 동 조약안을 비준하여 그 동안 덴마크의 1차투표부결로 야기된 統合 懷疑論이 가시기 시작 하였음. 또한 마스트리히트條約案이 독일헌법의 基本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그 동안 헌법재판소에 제소되었던 독일의 경우. “동 法案이 독일의 기본 법에 상충되지 않는다”는 지난 10월 12일 독일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마스트리히트조약안이 EU會員國들의 批准節次를 完了하기에 이르렀음.

경철폐, 모든 경쟁자의 동등대우 등 불완전 시장 요인의 제거)를 이름으로써 域內市場의 效率을 極大化하는 데에 統合推進의 基本原則을 設定하고 있다. 또한 EU는 공동정책의 대상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기본원칙이 적용되어 適切한 또는 調和된 制度的인 메카니즘을 통해서 域內市場에서 市場機能이 보다 活性化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法制定을 통하여 12개로 분할되었던 EU 역내시장이 하나의 단일시장으로 法的·制度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原則을 強化해 가고 있다(enforcement of rules). 이는 域內企業과 勤勞者에게 더 큰 경제적 자유를 부여하는 한편 消費者에게는 基本要求(essential requirements)의 充足과 동시에 選擇의 機會를 擴大하여 사회전체로 후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한편 統合白書와 유럽單一議定書에 나타나 있는 통합의 추진원칙 역시 위에서 제시한 입법원칙에서 언급한 기본목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條約에서도 입법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로마조약에는 명확히 명기되지 않았던 補助性原則에 대해서 마스트리히트條約에서는 EU차원에서의 개입을 매우 제약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個別會員國의 權限이 共同體次元으로 集中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手段의 하나인 것으로 분석된다. EU통합에 나타나고 있는 기본원칙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⁷⁾

<표 1> EU統合의 基本原則

原 則	內 容
• 加重多數決原則	- 租稅, 勞動力의 自由移動, 勞動權問題 등을 제외. 한분야에 대해 滿場一致制 대신 회원국별로 일정하게 分배된 투표수에 의거하여 결정하는 원칙.

7) 로마조약에서는 補助性原則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을 따라 원칙적으로 회원국의 정책수행이 우선시 되어 왔음. 그러나 유럽單一議定書 제130조 R항에서 環境問題의 언급과 관련, 會員國 차원에서보다 EU차원에서 접근이 당초의 목표수행에 유리한 경우 EU차원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마스트리히트조약은 보다 제약적으로 보조성원칙에 따라 회원국차원의 사업 수행성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EU차원의 介入이 可能하도록 明示하고 있어 補助性原則이라는 문구가 명문화되고 EU차원의 개입은 매우 제약적으로 명시하고 있음(마스트리히트條約 제3조 b항).

• 法制定優先原則	- 예산배정 등에 있어서 優先順位選定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關聯規程 및 法規制定을 優先으로 하는 原則. 단, 구조기금(Structural Fund) 배정의 경우는 예외.
• 特定國家中心의 執行委 運營禁止 原則	- 一部 國家 및 集團에 의한 執行委의 獨점적 운영에 따른 사안의 破壞性 방지 및 EU 執行委의 利益集團化 防止原則
• 域內國境撤廢原則	- 殘存하는 域內國境統制要素의 撤廢原則
• 補助性(subsidiarity) 原則	- 租稅의 賦課 등 會員國 政府의 役割保障으로 權限과 行政力의 集中化 防止 原則
• 相互認定(mutual recognition) 原則	- 會員國의 法的, 制度的 裝置에 대해서 會員國間 相互 認定原則
• 共同의 틀 마련 原則	- 相互認定の 原則과 관련하여 資格證, 認許可, 檢査 등에 대한 共同의 審査基準 마련 原則
• 共同規制의 原則	- 基本的 要求에 대해서 共同規制方案 마련 原則

자료 : • J. Pelkmans and P. Sutherland, Unfinished Business: The Capability of 1992, Governing Europe, 1989, CEPS Paper No. 44, pp.97-143.

• EC, Harmonization by Competition, Intereconomics, July/August 1987, pp.161-162.

• EU, Single European Act: SEA,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L 169, 29 June 1987.

나. EU의 立法過程

EU의 立法過程은 EU執行委가 法制定을 제안하여 EU理事會에서 完決된다. 즉, EU의 立法提案은 원칙적으로 EU집행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서 EU집행위가 입법안을 상정하여야 立法節次가 개시된다. EU집행위원회는 法案을 提案하기전에 종종 非公式的으로 各會員國 專門家 및 企業組織 등과 立法될 內容에 대해서 토의하는데 이 단계에서 利害集團들은 자기들의 立場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EU집행위가 마련한 立법안은 EU이사회에 제출되는데, EU理事會는 이 立법안을 채택하기전에 各회원국 정부내의 政策실무자 그룹 및 各회원국 대

표로 구성된 常任代表委員會(COREPER)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民主的인 節次를 거쳐서 EU共同體次元의 法規가 마련됨에도 불구하고 EU執行委 중심으로 立法活動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동안 EU집행위로의 權限集中과 이에 따른 EU집행위의 獨走憂慮 등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마스트리히트條約은 유럽議會(EP)의 權限을 強化하여 EU법규에 대한 制限的인 共同決定(co-decision) 權限을 附與하여 單一市場, 長期 研究開發 및 環境計劃, 消費者 保護 등 特定分野에 관한 EU法規 制定時 유럽議會에 共同決定權을 賦與하였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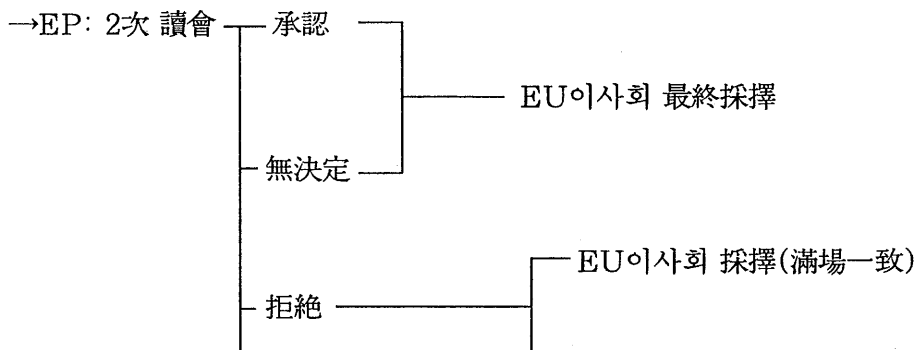
EU의 立法節次를 유럽議會的 協議節次를 거치는 경우와 協助節次를 거치는 경우 그리고 議會와 共同決定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럽議會(EP)와의 協議(consultation)에 의한 立法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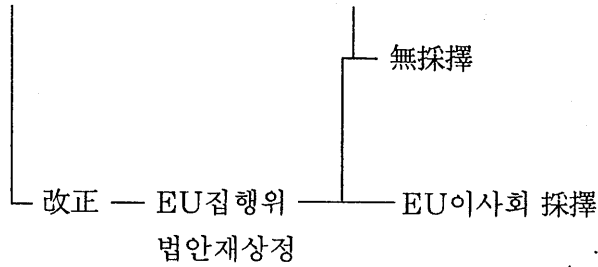
• EU執行委: 法案 提案EP: 意見提示→EU이사회: 決定

② 유럽議會와의 協力(cooperation)에 의한 立法過程

• EU집행위: 法案 提案→EP: 意見提示, 1次 讀會→EU이사회: 共同立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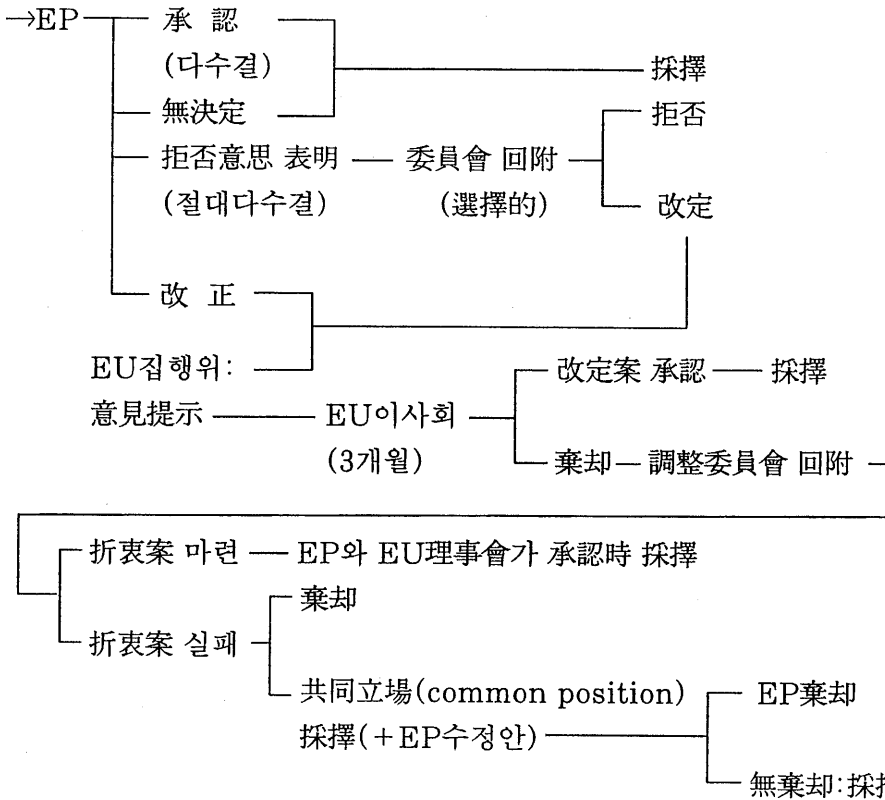


8) 마스트리히트條約에 의한 유럽의회에 관한 강화로 立法過程에서 EU이사회와 유럽의회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調整委員會(conciliation committee)를 구성하여 타협을 시도하며 유럽의회에서 계속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相關법규의 채택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음. 이밖에도 유럽의회는 新規會員國 가입 및 域外國家와 提携協定締結의 경우 뿐만 아니라 구주시민권 정책, 유럽의회의원 단일 선거절차 등에 대해 유럽의회에 동의권한을 확대하였음. 이는 그 동안 EU통합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意思決定 過程에서의 大多數 國民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소위 「民主的 節次」(democratic deficit)問題 解決을 制度化한 것으로 풀이됨.



③ 유럽議會와 共同決定(joint decision-making)에 의한 立法過程※

EU집행위: 법안 제안 → EP: 의견제시 → EU이사회: 공동입장 채택
(加重多數決, 期間制限 없음).



자료: Observatore Social Europeen, Synoptic Analysis Of The Treaties Before And After Maastricht, Working Paper.

※ 共同意思決定을 필요로 하는 事項은 아래의 內容과 같음. EU집행위는 마스트리히트 條約이 改正(1996년이후)되기 전에 공동의사결정관련 사항의 추가보완을 위한 報告

書を 作成해야 함.

- 勞動者의 자유이동(제49조)
- 資格證의 상호 인증(제57조 1항)
- 域內市場의 관점에서 立法의 接近(제100조 A항)
- 教育(제126조)
- 理事會 滿場一致에 의한 文化振興活動(제128조)
- 保健(제129조)
- 消費者 保護(제129조 A항)
- 汎유럽網 建設(제129조 D항)
- 技術 研究開發: 理事會 滿場一致에 의한 基本計劃(제130조 I항)

3. 마스트리히트條約의 構成과 內容

마스트리히트條約은 유럽연합을 法的·制度的으로 가능하게 하는 基本條約으로 로마조약의 부분적인 수정을 거친 유럽單一議定書와는 달리 유럽 법체계의 전면적인 개정(constitutional revision)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동條約은 3柱體制(Three-Pillar Structure)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기둥(First Pillar)은 현행의 EEC設立條約(로마조약)體系에 經濟·通貨同盟의 關聯規程을 포함시킨 기존의 EC조약의 수정규정이다. 두번째 기둥(Second Pillar)은 共同外交安保政策을 포함하는 外交·安保政策規程이다. 그리고 세번째 기둥(Third Pillar)은 司法과 內務分野에서 의 긴밀한 협력에 관한 규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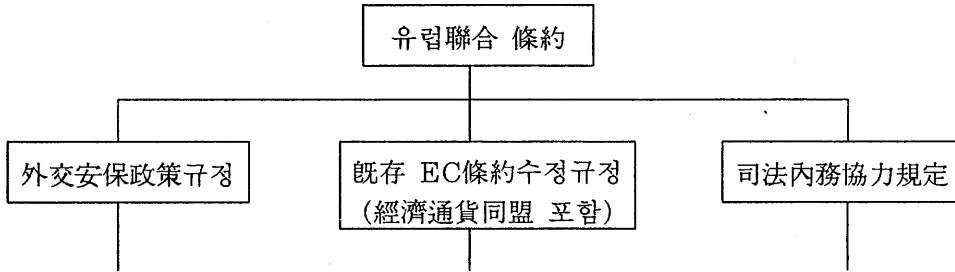
마스트리히트條約의 주요 골자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늦어도 1999년 1월까지 EU中央銀行의 설립을 통한 歐洲單一通貨를 採擇하며, 다음으로 共同外交·安保政策(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의 實施로 EU의 對外政策에서 統一성과 一貫性を 維持시킴으로써 對외적인 위상을 제고하며, 끝으로 내무·사법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등 명실상부한 유럽 聯合(European Union)을 형성해 간다는 것이다.

특히 마스트리히트條約에서는 環境, 研究·技術開發(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産業政策, 輸送, 汎유럽網(Trans-European networks), 소비자 보호 및 교육, 보건·문화관련 부문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다.

마스트리히트條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첫번째 기둥에 속하는 내용

으로 금세기내에 12개 회원국 공동의 EU 單一通貨의 창출과 유럽中央銀行의 설립을 목표로 하는 經濟·通貨同盟(EMU)의 추진이라 할 수 있다.⁹⁾

〈표 2〉 유럽연합 條約의 構成



9) 경제·통화동맹은 모두 3段階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지난 1989년 마드리드頂上會談의 合議에 따라 1990년 7월부터 시작된 제1단계에서는 모든 회원국 통화가 유럽 換率調整裝置(ERM)에 가입(현재 그리스 미가입, 영국과 이탈리아 탈퇴)되도록 추진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물가, 금리 등 주요 경제정책의 조화를 위해 多者間 監視制度(Multilateral Surveillance)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금융, 보험 및 투자서비스 등의 역내자본거래가 자유화되었음. 한편 1994년 1월부터 이행되는 EMU의 제2단계에서는 過渡期的으로 유럽通貨機構(EMI; European Monetary Institute)를 설립하여 유럽中央銀行의 設立을 準備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음. 특히 EU회원국들은 건전한 通貨 및 財政政策을 유지하기 위하여 會員國間의 政策協助를 強化해 가도록 되어 있음. 1996년말까지 EU집행위와 유럽통화기구는 각회원국별 경제의 조화상태를 EU재무이사회에 보고하고, 財務理事會는 會員國別 經濟的 調和狀態를 평가하여 EMU의 제3단계로의 이행 가능한 국가를 EU정상회담에 권고하게 됨. EU정상회담에서는 經濟的 調和(economic convergence)기준을 충족시키는 회원국이 현 12개 회원국의 과반수가 넘는 7개국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가중다수결의 방법에 의하여 EMU의 제3단계로의 이행여부와 이행시기를 결정하게 됨. 회원국간의 경제적 조화 달성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게 됨.

- 인플레이율이 가장 낮은 3개 會員國의 平均에서 1.5%이내의 수준
- 當該年度 財政赤字가 GDP의 3%, 財政赤字의 累計가 GDP의 60%이내
- 長期利率이 가장 낮은 3개 會員國平均을 基準으로 2%이내의 수준
- 최소한 2년동안 基準換率의 平價切下를 실시하지 않아야 함.

다만 1997년말까지 EMU의 第3段階로의 이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999년 1월부터 經濟的 調和基準을 충족하는 會員國에 한하여 自動的으로 第3段階로 이행해 가게 됨. 또한 제3단계로의 이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원국들은 매 2년마다 審査를 거쳐 加入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분야에서 共同 政策 樹立 및 施行 • 理事會에서 政策의 원칙 및 방향수립 • 閣僚理事會에서 정책 이행에 필요한 사항결정(만장일치제) • 西유럽同盟(WEU)의 단계적 발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U관련 내용 • 共同市民權制度 도입 • 유럽議會의 권한 확대 • 共同體 관할권 확대 • 共同體의 효율성 증대 • 共同體의 구조변경 • 經濟·社會 結束 • 社會政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司法, 內務분야에서 協力(정치적 난민, 역외 국경통과, 이민정책, 세관협력, 마약퇴치, 테러 등 분야) • 동 分野에서 情報交換 및 協議, 共同立場, 共同措置 등
--	---	---

자료: European Social Observatory, Synoptic Analysis of the Treaties Before and After Maastricht, 1992, Brussels 참조.

Ⅲ. 主要 政策關聯法規의 內容과 向後 展開方向

1. 通商政策關聯法

(1) 法的 根據

EU通商關聯法은 크게 域內通商關聯法과 對外關聯通商法으로 2대별 된다. 域內通商關聯法은 域內貿易 自由化 原則, 原產地 規則과 域內貿易에 나타나는 障壁 등에 대한 것으로 域內市場(Internal Market)의 出帆으로 關聯節次가 간소화되고 域內교역을 제한하여 왔던 장벽이 原則적으로 除去 되었으며 잔존하는 내용들은 한시적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다. 한편 對外關聯 通商法은 共同體의 對外通商 權限, 對外貿易에 있어서 EU會員國들의 通商規制問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域外國의 立場에서는 EU의 對外通商關係法規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EU의 對外通商關係法規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된다.

첫째, EU의 對外通商權限과 관련하여서는 EU의 對外通商權限의 範圍

와 性質, 域外國 商品이 EU생산자에게 重大한 손해를 줄 경우 緊急輸入 制限 措置, 輸出自律 規制, 市場秩序 維持協定, 새로운 통상정책 등의 통상수단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대외무역에 있어서 EU회원국들의 通商規制問題는 對外貿易에 있어서 회원국의 協定과 通商制度, 輸入課徵金, 差別的 內國稅, 數量制限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조치들에 대한 관련법규 등을 살펴 보아야 한다.

이러한 EU의 대외통상정책마련을 위한 법적인 근거는 로마조약에 명기된 통상정책부문인 제4장 通商政策(Commercial Policy 제110-116조)에 의거하고 있다. 이 통상정책부문은 역내단일시장의 완성을 위한 유럽단일 의정서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다시 마스트리히트條約에 의해 수정되었다.

마스트리히트條約에 의해서 修正된 주요내용은 로마조약체결이후 13년 내에 역내시장을 완성키로 하고 그 過渡期間 동안 對外通商政策에 적용되어 오던 제111조와 제114조 및 제116조의 削除에 이어 對外共同政策을 규정 한 제113조 및 회원국별 통상규제를 규정한 제115조의 수정이다.

이가운데 제113조는 ①對外 共同關稅率의 修正, ②關稅協定과 通商協定의 체결, ③自由化 措置의 統一, ④輸出 政策, ⑤貿易上의 防禦措置(덤핑 防止稅 및 相計關稅) 등의 5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EU차원의 權限事項을 包括적으로 예시하는 것을 피하여 왔다. 그러나 마스트리히트條約에서는 EU가 域외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정 등 대외공동정책 협의시 EU執行委가 協商主體가 되어 通商權限을 갖는다는 제228조를 적용하도록 명기하였다.

제228조의 適用을 明文化한 것은 첫째, 그 동안 通商分野에서 共同體의 權限이 一律的 原則을 규정하는 데에 한정하며, 그 權限의 實施를 회원국에 귀속시킬 것인가, 둘째, 會員國이 一律的인 原則以外의 權限에 대해서는 自律的인 權限을 가질 것인가, 셋째, 共同體가 일률적인 규정과 실시에 있어서 排他的인 權限을 가지며 회원국은 통상분야에서 일체의 권한을 갖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최소한 EU次元에서 一律的인 原則을 規定하는데에는 共同體의 權限이 強化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제115조의 수정내용은 과도기에 한해서 EU회원국들이 非常時의 경우 EU집행위의 승인을 얻어 第3國商品의 會員國間 自由移動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는 조항가운데 “過渡期 동안”(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이라는 文句가 削除되었다. 또한 한 회원국의 제3국상품의 회원국 간 자유이동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事前에 EU執行委의 許諾을 얻고 이 事實을 餘他 會員國에 通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執行委는 會員國이 취한 조치가 EU회원국 전체의 利益에 違背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를 수정 또는 폐기토록 할 수 있어 EU의 共同通商政策 遂行에 있어서 제113조의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EU의 權限이 一層 強化된 것이 두드러진 특징가운데 하나이다. 이 115조는 1993년 1월 역내시장 출범과 동시에 무효화 또는 사문화가 예상되어 왔으나, 동 조항의 완전한 삭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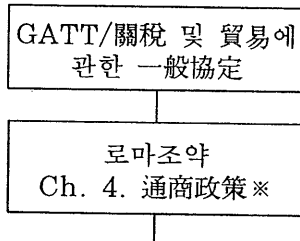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보아 EU의 通商政策은 제113조에 根據하여 對外共同政策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별로 복잡다기한 貿易制度를 시행함에 따라 共同關稅政策이 EU域內交易을 원활하게 하는 결정적인 제도로서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에 따라 EU는 공동관세정책이외에도 雙務的인 多樣한 政策手段을 開發·實施하고 있다. 즉, EU는 輸入禁止, 輸入許可, 輸入쿼터, 다양한 과징금, 최저가격, 수입제한 협정 등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산업별로 보호정도가 상이한 정책을 실시하는 외에도 輸出自律規制(VER) 등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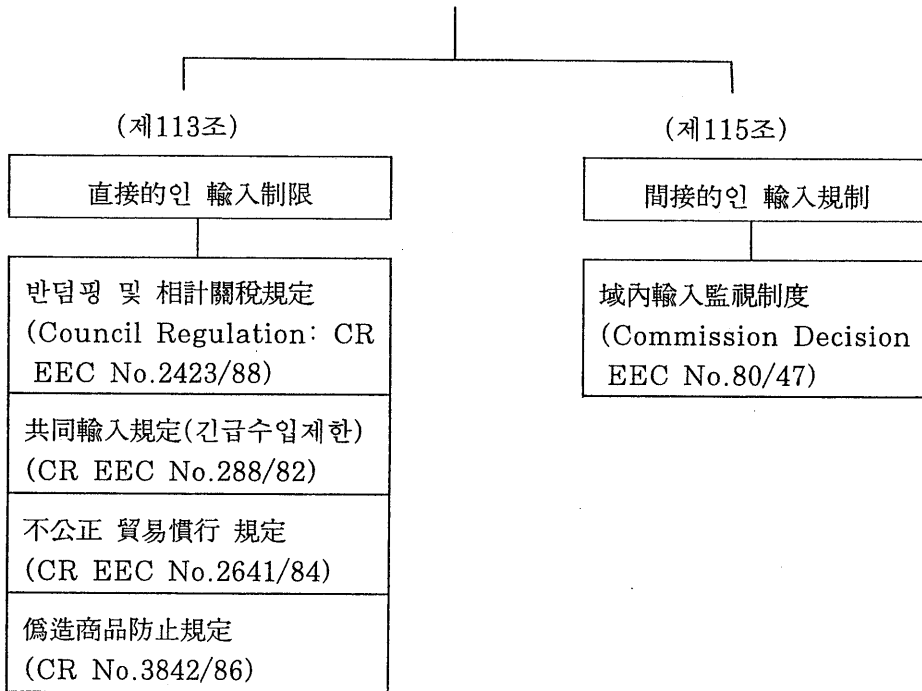
이러한 EU의 쌍무적인 수입제한 조치들은 그 동안 GATT중심의 多者間 貿易體制의 明瞭性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강한 差別主義的인 性格을 갖는 要因으로 指摘되어 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는 共同體次元에서 일체의 대외통상문제에 대해서 排他的인 權限을 가지나 法制定原則에 의거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공동체에 권한이 위임된 통상정책 수단은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표 3>

EU의 通商政策 手段





※ EEC설립조약 제4장 통상정책은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하여 수정됨.

제113조의 직접적인 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 反덤핑 措置, 補助金 相計措置, 緊急輸入制限 措置, 不公正 貿易慣行 措置 및 偽造商品 防止措置 등이 있으며, 제115조와 관련 간접수입규제로서 域內輸入監視制度 등이 運用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EU는 對外通商과 관련하여 마스트리히트條約에서 共同體次元과 관련된 조항인 제113조 및 제115조의 원칙조항에 관해서만 수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표-3>에서 보여준 통상정책의 내용가운데 최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競爭政策 및 産業政策 등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反덤핑 關聯條項에 관해서만 살펴 보고자 한다.¹⁰⁾

10) 이 글에서는 紙面關係로 反덤핑 關聯法規가운데 後述하고자 하는 競爭政策과 관련하여 正常價格, 被害, 共同體의 利益 등 反덤핑 構成 要件 및 競爭政策과 反덤핑 規程과 의 關係 등에 국한하여 살펴 보고자 함.

(2) 反덤핑 關聯 法規

EU의 反덤핑에 대한 定義는 1988년 7월 11일 채택된 EU역외로부터의 덤핑製品 또는 補助金 수취제품 수입방지에 관한 규정 EEC 2423/88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규정 제2조제2항에서는 “어떤 製品의 共同體에 대한 輸出價格이 類似製品의 正常價格보다 낮으면, 이 製品은 덤핑된 것으로 看做된다”라고 明示하고 있다.

덤핑製品에 대해서는 反덤핑關稅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공동체안에서 자유로이 유통되어 피해를 야기시키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제2조 제1항). 또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공동체의 개입이) 요구”되는 경우(the interests of the Community call for intervention, 제11조 제1항과 제12조제1항에 근거)에 잠정관세 또는 확정 反덤핑·相計關稅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같은 EU의 反덤핑 관련 정의에 기초할 때, 앞으로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 필요한 正常價格(normal value, 제2조제3항), 被害(injury, 제4조), 共同體의 利益(the interest of the Community,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등에 대한 定義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正常價格(normal price)

Council Regulation No. 2423/88 제2조제3항은 正常價格(normal price)의 설명을 통해서 空間적으로 다른 두 市場의 價格差別化 問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정상가격이란 輸出國이나 原產地 國家안에서 소비되기로 예정된 類似製品에 대해서 통상적 거래과정에서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되어야 할 對等價格을 말한다.

또한 이 가격에서 該當販賣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割引과 還拂 등 輸出業者가 실제로 추가가격을 낮추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이는 控除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상거래에 있어서 同種商品의 판매실적이 없거나 또는 동종상품의 국내판매량이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경우에는 構成價格

(constructed value) 또는 第3國으로의 輸出價格을 正常價格으로 적용한다(동 규정 제2조제3항 b).

여기서 구성가격이란 生産費에 積정한 利潤을 더함으로 결정되는 가격인데, 生産비에는 原產地 國家안에서 통상적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와 제조에 드는 모든 固定費用과 可變費用에 販賣費, 管理費 및 그밖의 一般費用을 더한 것으로 근거하여 算定하게 된다.

또한 제3국 수출가격은 제3국으로 수출될 때의 유사제품 대등가격으로 이 가격은 최고수출가격일 수도 있으나 대표적인 가격이어야 한다.

나. 被害(injury)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상가격에 대한 정의는 매우 까다롭다. 被害에 대한 정의 역시 EU의 반덤핑법에서 가장 어려운 정의 가운데 하나이다. CR No.2423/88 제4조제1항은 피해의 판정요건으로 “덤핑되었거나 補助金을 수취한 輸入品이 덤핑이나 補助金支給의 결과를 통하여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경우, 즉 기존 EU산업에 중대한 被害를 일으키고 있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산업의 설립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被害危險의 判定은 특정상황이 실제적인 피해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CR No.2423/88 제4조제3항). 특정상황이 실제적인 피해로 진전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① EU지역으로 덤핑제품 또는 보조금 수취제품의 수출 증가율
- ② 기존 또는 가까운 장래에 操業에 들어갈 原產地 國家 또는 輸出國의 輸出 能力 및 EU로의 輸出可能性 與否
- ③ 補助金의 性格 및 이로 인해서 貿易에 미칠 수 있는 影響 등이다.

피해에 대한 존재여부는 CR No.2423/88 제4조제2항 a~c에서 정의되고 있다. 輸出物量(volume, 제4조제2항 a)과 덤핑輸入價格(제4조제2항 b)은 生産, 施設의 使用, 販賣, 市場占有率, 價格, 利潤, 投資의 期待所得, 雇傭(제4조제2항 c) 등에 의해서 측정되는 關聯産業에 대한 영향으로 평가된다.

이 가운데 피해여부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判斷基準은 덤핑수입에 의한 가격인하, 국내공급업자의 市場占有率(market share)의 인하 또는 덤핑수입에 의한 가격의 인하이다.

다. 共同體 利益(the interest of Community)

CR No.2423/88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은 각각 共同體의 利益을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 EU집행위는 暫定關稅 또는 確定反덤핑關稅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EU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EU집행위의 “介入”(intervention)이 義務化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제4조(피해)의 경우는 기존 EU역내산업의 이익에 관련된 것과는 달리, “共同體의 利益”의 경우 “利益”에 대한 정의는 광의의 해석으로 간주되고 있다.

EU공동체내 소수업체의 이익이나 소비자 이익에 반하여 몇몇 산업의 이익에 중점을 두게 됨에 따라, 이 “共同體 利益”條項은 産業政策 또는 競爭政策과 관련된 논의를 제기하게 된다.

(3) 反덤핑과 獨占禁止와의 關係

反덤핑과 獨占禁止政策은 각각 다른 規制目的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상충되는 부문도 있다. 그러나 양자의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EU域內産業의 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관점에서 EU역내산업의 보호라는 목적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반덤핑 규제는 제품생산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外國産業에 대해서 競爭을 意圖的으로 制約하는 保護主義의 수단이라고 비난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EU당국은 反덤핑 節次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제소자가 독점금지과 반덤핑조사의 목적이 상이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독점금지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

반덤핑조치가 EU역내산업계의 반경쟁적 행위를 보호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EU집행위 반덤핑 담당부서인 DG I은 輸出業者 또는 輸入商에게 反競爭的 行爲에 대한 立證資料와 함께 이 사실을

獨占禁止部署인 DG IV에 通報하도록 권고하여 왔다.

DG IV는 이를 조사한 후에 輸出業者 또는 輸入商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면, EU獨占禁止法에 의하여 獨占禁止 侵害行爲中止 또는 필요시 벌과금 등의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점금지법 침해행위가 입증되는 과정에서 反덤핑關稅가 부과되었다면, EU집행위는 반덤핑에 의한 EU산업구제조치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CR 3687/87, CR 1361/87, CR 2808/89).

그러나 최근 EU는 1989년 미국산 소다회 事件에서와 같이 獨占禁止問題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판단과는 달리, EU司法裁判所가 Extramet사에 대해 내린 판결에서와 같이 반덤핑 결정에서 독점여부의 判定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어, 獨占禁止와 反덤핑 政策 相互間의 關係가 점차 중요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¹¹⁾ 이는 역내산업의 獨寡占構造에 따른 産業被害를 줄이고 公正한 競爭을 誘導하기 위한 措置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이는 世界經濟 興件이 점차 汎世界化 되어감에 따라 반덤핑 등의 조치에 대한 各國 企業들의 對應能力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通商政策手段만을 통해서 域內産業의 競爭力을 強化하기가 어렵다는 要因도 감안된 조치로 풀이된다.

(4) 通商政策의 向後 展開方向

EU의 通商政策方向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호혜원칙을 지켜갈 것이나 역외로부터의 競爭增大에 따른 域內生産者 保護라는 양면성을 보일 것이다.

지난 1980년대를 통하여 EU는 反덤핑措置의 強化, 現地部品調達 義務,

11) Extramet社에 대한 判決(1992년 6월 11일)은 향후 반덤핑 조사에서 競爭問題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同 事件에 대한 EU法院의 판결은 EU역내산업이 받는 피해와 관련 피해소자가 요청하는 反競爭의 행위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EU집행위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 분석됨. 이 경우는 EU域內生産者가 域內輸入業者에게 供給을 中斷함으로써 EU역내내수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덤핑수입에 의한 價格下落 주장은 檢討對象이 될 수 없다는 것과 또한 덤핑수입이 EU업체간에 競爭을 제한하는 談合行爲를 저지하는 경우에 이는 EU反덤핑 規制에 명시된 피해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判例로 남긴 것으로 해석됨.

原產地 規程의 強化 等 通商政策手段을 혼합하여 구사하여 왔다. 또한 미국의 1974년 通商法 第301條를 의식하여 不公正 貿易慣行으로부터 惹起되는 被害除去 및 共同體 權利行事 保障 등 不公正 貿易規制措置를 크게 강화하였다.

이러한 EU의 通商政策基調는 1993년 域內市場의 出帆을 계기로 EU域內市場에서 企業間 競爭을 制約하는 要因을 除去하여 시장이 기능하는 域內 單一市場을 이룬다는 입장에서 競爭, 産業政策 手段 등을 通商政策手段에 連繫하여 왔다. 이는 역외국 기업들이 EU의 통상정책수단에 대해서 상당한 對應能力을 갖추에 따라 통상정책수단만으로는 EU域內産業의 競爭力을 提高시킬 수 없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EU는 1994년 3월 7일 反덤핑關稅關聯 規程을 개정하여 사실상 역외국에 대한 反덤핑 조치를 강화하였는데, 이번 개정도 域內市場의 效率性 提高와 域內産業의 競爭力 強化라는 관점에서 이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EU는 이번 法改正을 통하여 反덤핑 調查期間의 短縮(중전 18개월에서 15개월), 意思決定節次의 改正(가중다수결에서 단순다수결) 및 利害當事者의 範圍 등을 擴大(중전 대상범위인 제소자, 수출입업자외에 수입상품사용자 및 소비자 단체 포함)하였다[반덤핑 및 상계관세규정 CR (EEC) No.2423/88을 개정한 CR(EC) No. 521/94과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 CR(EEC) No.2641/84와 CR(EEC) No. 2423/88을 개정한 CR (EC) No. 522/94 참조].

앞으로도 EU는 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통상정책수단과 여타의 공동정책수단을 연계하여 갈 것이다. 특히 EU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환경정책, 경쟁정책 수단 등을 UR이후의 WTO체제아래에서 새로운 라운드 이슈로 제기하여 이를 통상정책과 연계시키는 노력을 하여갈 것이다.

2. 競爭政策關聯法

(1) 法的根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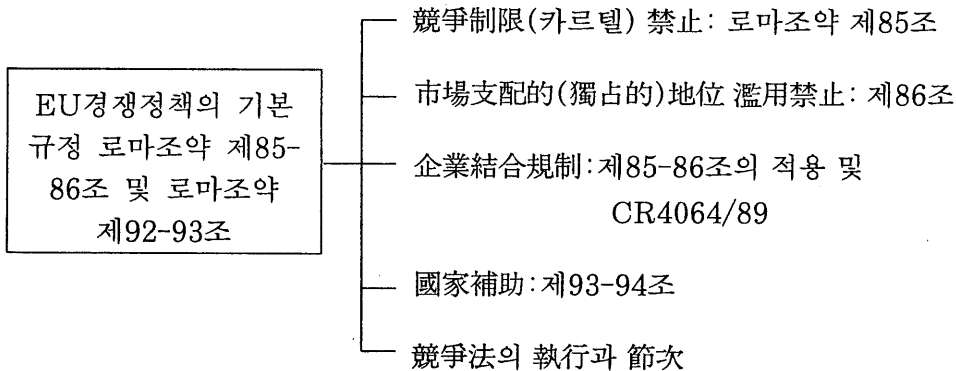
EU競爭政策은 완성된 域內市場안에서 기업들간의 競爭制限行爲를 規制하기 위한 政策手段이다. EU統合 내용의 상당부분이 각회원국들의 行爲를 對象으로 하고 있는 데에 비하여 競爭法은 會員國들의 企業行爲를 規制對象

으로 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EU경쟁법의 특징은 EU기업들의 效率性을 높이고 自律競爭을 保障하기 위하여 경쟁정책에 관한 규정이 EU의 역내기업에 대해 直接的이고 法的으로 強制的이라는 성격을 갖는 점이다.

EU경쟁정책의 法的인 根據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 자유로운 市場經濟行爲를 촉진하고 生活水準의 改善을 위하여 共同體次元의 課題를 규정한 로마조약 제2조와 역내공동시장에서 競爭이 歪曲되지 않도록 制度的인 裝置 마련을 규정한 제3조 F항이다.

로마조약 제2조와 제3조 F항에서 규정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로마조약 제85-94조에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EU의 경쟁정책은 경쟁제한(카르텔)의 금지, 市場支配的(獨占的)地位의 濫用禁止, 企業結合의 規制, 國家補助 등을 그 範圍로 設定하고 있는데, 각 項目別 適用條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競爭政策 關聯法規 內容

경쟁정책은 국가의 고유한 국내정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경제의 범세계화(globalisation)에 따라 경쟁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될과 동시에 이로 인한 국제적인 마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¹³⁾ EU의 경우

12) 주11에서 설명한 Extramet사의 경우 참조.

에 있어서 역내시장의 완성에 따라 역내무역장벽이 크게 완화됨과 동시에 역내시장에서 동종기업간의 경쟁이 증대되어 왔고 이에 따라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에 이어 EU가 경쟁정책 관련법규 가운데 獨占禁止條項의 域外適用을 하고 있고 GATT/UR이후 WTO체제아래서 경쟁정책이 새로운 라운드로 인식되고 있어 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EU집행위와 EU사법재판소 등 공동체차원에서 일련의 결정 및 판결에 의하면 로마조약 제85조와 제86조가 EU영역밖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가. 競爭制限(카르텔) 禁止

EU역내에서 기업들간의 競爭制限을 금지하는 기본규정은 로마조약 제 85조이다. 이 조항은 사업자들간의 모든 합의(all agreement between undertakings)와 사업자간의 연합에 의한 모든 결정 및 모든 종류의 담합 행위으로써 회원국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공동체내의 경쟁을 저해, 제한 또는 왜곡시키는 행위를 규제(로마조약 제85조제1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U법에 의해 금지되는 경쟁제한행위는 EU내의 자유로운 경쟁에 영향을 주고 회원국간의 통상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競爭制限 行爲의 主體가 되는 기업이란 경제행위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즉 경제의 독립을 보유한 법적인 존재이면 되고 개인 또는 공공기업은 물론 상업적 또는 경제적 행위를 수행하는 회원국도 포함될 수 있다.

13) EU競爭法の 역외적용은 ①국제법상 자국이외에서 시작된 행위가 자국의 영토안에서 완성되는 경우 그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다는 객관적 영토원칙과 ②자회사통상정책의 실질적인 분야가 모회사의 통제아래 있는 경우 경쟁법을 위반한 자회사의 행위는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기업 실체이론(doctrine of enterprise entity, Commercial Solvents社 사건이 이 경우에 해당)과 ③당사자가 EU역내에 존재여부를 떠나서 계약 또는 관행이 EU역내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효과이론(effect doctrine, Dyestuff사건, Beguelin사건 등이 이 경우에 해당) 등에 근거하고 있음.

이러한 경쟁제한행위로는 직접·간접적인 가격고정(제85조제1항 a), 생산·판매·기술개발 또는 투자의 제한(제85조제1항 b), 시장이나 공급원의 할당(제85조제1항 c)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이러한 경쟁제한 행위는 자동적으로 無效이며 시행될 수 없다(로마조약 제85조제2항, 이런 경쟁행위를 범한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표 4>

항 목	세 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간의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간의 모든 합의 - 사업자 연합(단체)의 모든 결정 - 협조행위(concerted practices): Dyestuff사건, Sugar사건 및 Pioneer사건 등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간의 통상에 대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회원국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려는 EU의 목적을 침해할 수 있는 직·간접,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여부로 그 영향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의 저해,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사법재판소: 가격결정 또는 시장분할 등에 대한 합의로 협의적인 해석 - EU집행위: 광의의 해석으로 경쟁제한에 대한 개념상의 문제를 제기(특히 수직적 합의의 경우)

그러나 이러한 競爭制限禁止의 例外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제8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품의 생산·판매의 개선 또는 기술적·경제적 진보 촉진에 기여하고, 그 결과로 초래되는 이익이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경우, 사업자 등에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제한만을 부과하는 경우와 그러한 사업자들에게 문제의 생산물에 대한 주요부문에 있어 경쟁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EU집행위의 결정이나 정책에 의하여 免除되는 경우도 있다.

나. 市場支配的 地位 濫用禁止(로마조약 제86조)

로마조약 제86조는 EU역내시장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에 의한 독점적 지위의 남용이란 EU회원국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獨占的 地位를 갖는 그 자체가 금지된다기보다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독점적 지위의 濫用으로 금지되는 것은 직접·간접으로 불공정한 구매 또는 판매가격의 결정(제86조 a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생산, 시장, 기술개발의 제한(제86조 b항), 공급거부 또는 제3자에게 경쟁적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거래조건의 부과(제86조 c, d항) 등의 경우이다.

동조항에서 독점적 지위란 한 기업이 경쟁기업은 물론 소비자로부터 독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힘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기업의 시장지배력이다.

로마조약 제85조의 경쟁제한행위 금지의 경우와는 달리 독점적 지위의 濫用禁止에 대한 제86조의 적용으로부터 예외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특정 행위가 제86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가 존재하는지, 그러한 지위의 남용이 있는지, 회원국간 통상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된다[〈표 5〉 참조].

〈표 5〉

항 목	세 부 내 용
• 시장지배적 지위의 존재 여부	- 관련(상품)시장의 수용 및 공급 대체성 검토 - 시장지배력 - 하나 또는 다수의 사업자 - 관련지역시장
• 지위의 남용여부	- 불공정 가격(unfair prices) - 리베이트 가격 - 차별적 가격책정(discriminatory pricing) - 약탈적 가격책정(predatory pricing) - 공급거절(refusal to supply)

	- 불공정 거래조건(unfair trade conditions)
• 회원국간 통상에 미치는 영향	-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보다 오히려 공동시장안에서의 경쟁구조에 주는 영향에 중점을 둠.

다. 企業結合 規制(로마조약 제85-86조 및 CR4064/89)

역내시장통합으로 EU역내에서 買受·合併 등에 의한 기업결합의 사례가 건수, 금액면에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기업결합의 사례증가는 역내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법상의 규제필요성도 크게 증가하여 왔다.

EU사법재판소는 企業結合에 대해 로마조약 제85-86조를 적용하여 판례를 발전시켜 왔으나, 1989년 EU이사회는 기업결합규칙 4064/89호의 채택을 통하여 기업결합규제를 보완하여 왔다. 이러한 EU의 기업결합규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6>

항 목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래의 기업결합규제 • 로마조약 제86조 적용: 콘티넨탈 캔사건(73.2) • 로마조약 제85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작기업설립 -수평큰체른 창설 -지분권 취득: 필립 모리스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배적 지위를 소유한 기업이 그 지배적 지위를 강화하는 기업결합규제 목적 - 특정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기업결합”규제 - 지분권 취득을 특정시장에서 경쟁조건의 변화로 간주하여 85조의 경쟁제한 금지조항 적용 이를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통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CR4064/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기업 결합에 대한 규제 목적. 공동체 규모의 기업결합으로 시장 구조에 장기적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 규제

라. 國家補助(로마조약 제93-94조)

로마조약은 EU역내에서 貿易競爭을 왜곡하는 회원국정부의 국내산업에 대한 보조(state aids)에 대해서 역내시장정신에 위배된다고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다(제92조제1항). 로마조약 제92조 제1항은 회원국정부가 부여하거나 또는 국가재원으로 지원하는 모든 형태의 보조로서 특정기업 또는 특정재화의 생산에 이익을 부여함으로써(시장기능을) 왜곡하거나 경쟁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것은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회원국간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한도내에서 공동시장과 양립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대상분야는 운송, 농업 및 국가안보를 포함하는 모든 분야이며, 정부의 보조금 내용은 정부의 直接造成金과 補助金뿐만 아니라 저리 융자, 대출보증, 세금경감, 유리한 조건을 정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그리고 기타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 등 모든 형태의 직접·간접의 국가보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보조는 반드시 경쟁기능을 왜곡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며 회원국간의 교역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부의 보조가 허용되고 있는데, 예컨대 자연재해에 대한 損害救濟(제92조제2항), 낙후지역에 대한 支援(제92조제3항) 등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EU회원국들은 새로운 國家補助計劃을 수립하거나 또는 기존의 보조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EU집행위에 통지할 의무(제93조제3항)가 있으며, EU집행위는 이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 또한 EU집행위는 회원국의 보조계획을 변경, 취소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기존의 모든 보조계획을 항시 실시할 의무가 있다(제93조제1항). 이밖에도 EU집행위는 회원국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제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제93조제2항).

<표 7>

조 항	주 요 내 용
제92조 제2항	- 제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개개의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성격의 보조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구제에 대한 보조
제92조 제3항	- 생활수준이 열악한 지역 또는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보조 - 유럽의 주요한 계획집행을 위한 보조 - 회원국의 경제상 심각한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보조 - 경제적 활동의 발전이나 경제지역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조

(3) 競爭政策의 向後 展開方向

EU의 경쟁정책은 좁은 의미에 있어서 로마조약에 규정한 각종의 반트리스트정책의 관련조항이 이에 해당하며 넓은 의미로서는 자유로운 市場經濟原理를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규제하는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 보거나 EU집행위의 경험에서나 그 범위가 상당히 인위적으로 可變的인 경우가 허다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EU는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명확한 판정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정에 있어서 명료성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EU경쟁정책의 業務領域은 당초 기업간의 경쟁제한행위, 기업의 흡수·합병 등 결합행위, 정부보조 및 지원 등에서 시장개방 및 접근문제로 확대되는 한편, 對象分野도 수송, 통신, 에너지 등 산업정책의 분야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EU의 경쟁정책은 EU가 EFTA지역국가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편입하는 등의 확대에 따라 적용대상 국가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경쟁정책이 WTO체제아래에서 UR이후의 새로운 多者間通商懸案 課題로 떠오르고 있어 앞에서 언급한 명료성 문제 등이 보완되어질 것이나 통상정책과 연계하여 경쟁정책이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나 투자를 제약하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발전해 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

3. 環境政策 關聯法

(1) 法的根據

EU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EU는 1972년 파리정상회담을 통하여 “경제성장만이 그 목적 자체는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일련의 기본원칙을 채택하면서 일찍부터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EU의 環境關聯立法은 대부분 공동시장의 설립이나 기능강화(establishment or functioning of the common market)에 관해 규정한 로마조약 제100조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로마조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EU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appropriate measures)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EU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조항인 제235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 100조와 235조 두 조항에 모두 근거하여 立法化되는 경우도 있다.

유럽單一議定書(SEA)는 환경정책을 공동정책의 하나로 규정되어 EU 집행위에 입법권한을 부여하였고, 환경보호, 보호, 개선 등 환경정책의 목표와 오염의 근본원인 제거, 오염자 부담원칙, 여타 공동정책에 환경요소 포함 등의 원칙(제130조 R항)과 다수결 원칙, 구주의회와의 협력절차 등 법적인 절차(제100조 A항) 등을 규정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Title VII의 유럽단일의정서에 의해 수정된 로마조약 제130조 r, s, t항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그 법적인 절차는 공동체의 설립과 정책에 관한 협약 규정인 Title II의 제100조 a항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는 유럽단일의정서의 내용을 상당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약 제2조는 유럽단일의정서에서의 “지속적이고 균형된 확대도모”(promoting a continuous and balanced expansion)를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지속가능하고 非인플레이적인 成長”(sustainable and non-inflationary growth respecting the environment)으로 수정하여 경제성장이 더이상 최종목표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환경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環境政策 關聯法規 內容

가. 環境政策의 目標 및 原則關聯 法規

環境政策의 目標와 原則에 관련된 法規는 법적인 근거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마스트리히트條約과 기존의 로마條約 및 유럽單一議定書와의 차이점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특기할 사항은 유럽단일의정서에 의해서 수정된 로마조약 제130조 r항 4에서 명시한 “제반목적의 성취가 개별회원국차원에서보다 공동체차원에서 더욱 용이할 경우에는 공동체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명시한 보조성 원칙을 제거한 점이다.

이는 마스트리히트조약 제3조 b항에서 “회원국 차원의 수행성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EU차원의 개입”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註 7 참조). 그러나 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측면에서는 공동체차원의 단일표준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환경분야에서 EU차원의 역할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마스트리히트條約 제130조 r항에서는 EU차원의 정책적인 조화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세이프 가드조항을 명기한 점이다. 즉 EU는 비경제적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회원국들의 잠정적인 조치와 조사 절차 등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분야의 입법절차를 규정한 제130조 s항에서는 의사결정내용을 보다 구체화 하여 협력절차, 대상분야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130조 t항에서 국가별 조치의 일치를 위하여 회원국별 조치가 있는 경우 회원국들은 EU집행위로 보고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표 8> EU의 環境政策關聯 主要法規 改正內容

로마조약 · 유럽단일의정서	마스트리히트조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마조약 제2조: 동체의 課題定義 지속적이며 균형된 확대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이며 균형된 확대도모를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지속가능하고 비인플레이적인 성장으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0조 r항: 共同體의 環境에 대한 범위(scope)와 활용방식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汚染者負擔原則 - 환경정책과 여타공동정책의 연계 - 개별회원국 사업수행보다 공동체 수준에서 수행이 유리한 경우 인정 (補助性 原則 명기) - 개별회원국의 재정지원 및 적절한 조치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차원에서 뿐만아니라 지역협력, 세계적환경문제 등에 관한 조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목적의 공동체환경정책 추진 - 환경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공동체 정책의 개념 및 적용분야에 포함 - 공동체차원의 조화적인 조치에 세이프 프가드 조항을 포함하여 비경제적 환경적 이유에 의해서 회원국의 잠정조치 및 조사절차 등 허용 - 보조성원칙의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0조 s항: 理事會는 滿場一致로 다음 사항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가 수행한 사업내용 - 가중다수결 방식으로 결정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의사결정내용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0조 r항에서 설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협력 절차: 이사회가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재정지원 등 - 만장일치 결정(공동의사결정에 관한 제100조 a항과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관련 조항/지역사회개발, 토지 사용, 수자원관리 분야/에너지 관련분야: - 회원국 책임아래 환경정책의 자원 조달 및 정책수행(일부 정책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0조 t항: 회원국들은 로마조약과 양립하여 보호주의적인 조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조치는 EU집행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나. 其他 環境政策 關聯法規

EU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環境과 관련하여 유럽단일의정서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EU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는 현재 수질, 대기, 화학물질, 소음, 동·식물 자연보호 등의 분야에서 약 200여 개의 입법조치를 채택하였다.

국제환경입법과 관련하여 1993년 12월 가입한 유엔기후협약을 비롯한 13개의 협약과 38개의 의정서에 가입중이며, 동·식물보호에 관한 멸종동식물 협약(CITES)보다 광범위한 규정, 바젤협약보다 엄격한 폐기물 교역 통제입법 등을 추진중이다.

EU의 환경입법은 주로 지침의 형태로 가이드 라인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회원국은 자국의 고유한 사정과 여건을 감안하여 국내입법절차를 거쳐 이를 수용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입법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EU의 分野別 環境關聯 主要立法現況

關聯規程(案)	主 要 內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 및 폐기물 관리지침(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 및 포장폐기물 관리에 있어 회원국별 조치의 조화, 환경보호 수준제고 및 역내시장의 원활한 운영 도모 - 각 회원국 포장폐기물 발생의 사전예방 조치 실시 및 재사용, 재생, 복원조치를 실시하여 폐기물의 최종처리(매립·소각)의 감축 - 동 지침 발표후 5년내 무게기준 최대 65%, 최저 50% 복원 및 포장폐기물 재질 전체 무게기준 최저 45%, 최저 25% 재생목표 93년 12월 공동입장에 관한 정치적 합의 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배기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6년 1월부터 신형모델차량, 1997년 1월부터 모든 신규등록차량을 대상으로 배기한도치(g/Km)설정 CO₂ : 휘발류 엔진 2.2, 디젤엔진 1.0 HC + NO₂ : 휘발류엔진 0.5, 디젤엔진 0.7 분진: 디젤엔진 0.08 EU집행위는 94년말까지 2000년 이후 구체적인 조치 방향 제시 계획 CR 70/220/EEC의 개정으로 공동입장채택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존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2차 개정 가입(EU환경이사회, 1994.6.30 공동비준 합의) - HCFC : 95.1부터 최대 소비량은 89년 CFG·HCFC 소비량의 26%수준으로 동결, 2004년부터 35%수준으로 감축, 2015년 완전제거

	- 메틸브로마이드 : 95.1부터 최대생산 및 소비량은 91년 수준으로 동결 98.1이후 25% 생산감축
• 폐기물 매립지침(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제외 11개국 매립대상 폐기물 유출방지 조치 또는 최소한 관련법규의 조치 주장 • 영국은 보조성 원칙에 의해 규정마련 반대 • 현 EU집행위는 기본지침(Framwork Directive)형태의 지침 관련 추진 • 제 130조 s(가중다수결 방식)항을 법적근거를 삼고 있어 영국은 거부권을 상실
• 종합오염방지 지침(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설비의 오염방지를 다루는데 있어 기존의 수질·대기·지표 등 부분별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종합적 오염방지 대책 채택 • 절차의 단순화, 종합화 실시 • 각 회원국은 산업분야별로 현존하는 최고 기술에 의거 오염한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오염감축을 협상하게 함. • 대상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산업, 금속생산 및 가공, 비금속 광물제품, 화학산업, 폐기물 처리산업 등

자료: Club de Bruxelles, Environment in the Single European Market, Bruxelles, 1992 등 참조하여 작성.

(3) 環境計劃의 主要內容

EU는 1972년 10월 제2차 파리 정상회담을 통하여 “환경과 관련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은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환경보호에도 기여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선언이후 EU집행위는 환경계획을 작성하였고, 그 동안 4차에 걸친 계획이 시행(1차 1973-77, 2차 1978-82, 3차 1983-86, 4차 1987-92)되었고 현재 5차계획(1993-2000)이 시행되고 있다(〈표 10〉 참조).

〈표 10〉

환경계획	주요원칙
제 1,2차 環境計劃 (1차:1973-7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豫防治療 우선 • 초기 단계에서 環境被害 救濟

2차:1978-8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生態界 均衡을 손상시키는 사용이용 규제 • 환경관련 과학기술 개선 • 汚染者負擔原則 • 한 회원국의 활동이 다른 회원국내의 환경악화 야기금지 • 개도국 이익을 감안한 회원국 환경정책 감소 • 국제 조지를 통한 국제적·세계적 환경보호 증진노력 • 환경교육 강화 • 오염의 유형, 필요한 조치, 보호구역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환경보호조치 강구 • 회원국 환경정책과 공동체내 회원국 환경정책 조화
제3차 환경계획 (1983-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역내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총체적인 전략수립 • 오염통제보다는 오염예방에 중점을 두어 토지이용 계획 등을 환경보호의 개념에 포함 • 농업정책·지역개발 계획 등 다른 분야의 정책을 환경 문제와 통합 (예 : 로메정책 지원을 환경정책과 연계 실시)
제4차 환경계획 (1987-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방지, 자원관리의 개선, 국제적 활동, 적정 법률의 제정 및 기타 환경보호수단의 정비 등에 최우선 순위 부여
제5차 환경계획 (1993-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 환경피해 규제보다 근본원인 제거에 주안점을 둬. 특히 사전예방, 책임분담, 오염자 부담원칙 강조

자료: Club de Bruxelles, 전세서.

(4) 環境政策의 向後 展開方向

지금까지의 EU의 환경정책은 부분적으로 오염, 카테고리별로 규제관개로 방어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최근 산업체 전체의 오염배출을 규제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해 가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EU는 종합오염방지지침안(IPC: Integrated Pollution Control)과 Eco-Audit제도 등을 도입하여 환경문제에 관하여 법률적 규제보다는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능동적인 대응방식으로 전환하여 가고 있다.

또한 EU는 환경비용을 전통적인 비용개념에 추가시키고 환경요소를 여타 경제정책에 통합시켜 「環境對開發」이라는 일반적인 관념을 불식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환경보호가 경제성장과 유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EU는 구체적으로 자연자원의 가격을 설정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로서 하여금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예컨대 매립의 경우 소비자가 운반비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현재의 제도를 대신하여 자연자원·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함으로써 매립에 대한 일반의 인식변화를 유도해 가는 한편 환경보존에 기여해 간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EU는 에너지의 효율 제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비용중대 또는 비용전가의 목적이 아닌 경제성장 촉진,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환경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 가고 있다.

예컨대 폐기물 처리, 대체 에너지 개발 등 환경산업은 이미 수익성이 높은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93.12월 경제성장, 경쟁력 및 고용에 관한 백서 참고).

중장기적으로 EU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과세대상을 현재의 임금, 이윤 등에서 자연자원과 오염에 대한 과세원칙으로 점진적, 단계적인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제품이나 이윤에 대한 현행의 세제도를 토지이용, 공기, 수질오염 배출부담금 등으로 전환하고, 자동차세를 배기관련 도로 부담금으로 바꾼다는 것 등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연자원을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요소로 간주하고 이의 사용과 남용을 별도의 가격체계가 아래서 사용자에게 부과한다는 것이다.

IV. 示唆點 및 結論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는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條約의 발효로 지금까지의 經濟共同體에서 聯合體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조

약 제1조의 수정). 마스트리히트條約을 통해서 EU가 추구해 가고자 하는 것은 域內 經濟·社會의 結束(cohesion)을 強化하는 한편 非인플레이의인 方法과 環境分野를 고려한 持續的인 成長追求를 淸명함으로써 EU차원에서 環境分野 등 새로운 政策분야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있다(마스트리히트條約 제2조 및 제3조 참조).

EU는 이번 마스트리히트條約에서 과거 로마條約의 경우와는 달리 EU가 共同體 차원에서 역할을 강조하는 政策分野를 擴大(마스트리히트條約 제3조)함으로써 EU執行委 등 共同體 機構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분야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은 아직도 共同體의 權限과 役割이 制約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마스트리히트條約은 補助性 原則에 따라 각회원국들이 提案된 활동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共同體 次元의 개입을 명문화(마스트리히트條約 제3조 b항)하고 있어 EU집행위 등 공동체 기구로의 권한의 집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U는 마스트리히트條約을 통해서 通商·競爭·産業政策 등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통상관련 政策분야에서 政策수단간의 연계를 法的·制度的 측면에서 이룩하여 共同體 次元의 개입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EU가 域內市場에서 뿐만 아니라 世界市場에서 EU域內産業 및 關聯企業들의 競爭力을 強化하기 위한 努力의 하나로 看做된다.

이러한 共同體次元에서 EU의 政策적인 시도는 지난 1980년대 EU가 통상정책수단을 통하여 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¹⁴⁾가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EU는 1980년대 중반이후 유럽 單一議定書에 의한 역내단일시장 統合過程에서 경쟁정책 수단을 통한 역외기업의 EU역내활동규제 등 통상정책이외의 政策수단과 연계하여 EU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政策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시도하

14) 이와 같은 통상정책수단으로는 反덤핑 조치의 강화, 현지부품조달비율 의무화 조항 강화, 원산지 규정의 강화 등을 지적할 수 있음. 政策적인 관점에서 EU통상정책의 전개과정은 EC Commission간행, *Europe in the year 2000*, 제6장 1절의 Trends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p.145-149 참조바람.

여 왔다.

EU는 이번 마스트리히트條約의 발효로 貿易政策과 연계된 競爭政策 및 産業政策 手段이외에도 環境政策 手段을 域內共同政策의 範圍에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통상정책 이외의 수단에 의해서도 역외국과의 무역 및 투자에 의한 기업활동의 제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EU는 環境問題에 있어서 EU의 國際的, 世界的 役割을 강조(마스트리히트條約 제130조 r항에서 國際協力強化를 명문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예상되는 多者間의 環境라운드 등에서 EU가 주도적인 역할을 위한 법규를 정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EU는 환경정책과 관련 마스트리히트條約에서 비경제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緊急救濟措置條項을 신설하고 있다. 이밖에도 논의중에 있는 炭素稅(Carbon Tax)가 도입되는 경우, EU는 이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역외국에 대해서 貿易差別化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높아 무역정책에 연계된 정책수단의 개발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EU가 통상정책 수단과 연계한 경쟁, 환경 및 산업정책 수단의 조화를 통한 역외국에 대한 무역차별화 조치의 가능성은 GATT/UR 이후 새로운 다자간 라운드의 이슈가 가시화 되기 전단계인 향후 2-3년의 기간동안 특히 쌍무적 방식에 의한 통상압력수단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EU는 貿易政策手段에 連繫된 政策手段의 개발을 통해서 역외국과의 무역 및 투자에 차별적인 조치를 EU産業 및 域內企業의 競爭力 強化次元에서 摸索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입장에서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EU의 경험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경우에도 政策手段間의 연계를 통한 우리 産業의 競爭力 強化 努力을 法的·制度的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貿易·産業政策과 연계된 競爭政策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관련법규를 再整備하는 한편, 환경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環境政策과 이들 政策 手段과의 연계 등도 法的·度的인 면에서 順次的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수단의 법적·제도적인 연계는 EU의 경험에서 볼 때 市場이 機能을 하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競爭 및

環境 이슈를 개발해 가는 것이 바람직 스러울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GATT/UR이후의 無限競爭時代に 國內市場에서 뿐만 아니라 世界市場에서 우리 産業과 企業의 競爭力을 강화하는 諸般의 政策手段을 綜合的으로 마련하기 위한 基礎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